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55호

관보 제20278호(2022.6.2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2022-83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p>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들을 위해 직업훈련, 소득창출지원사업 등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공공주택사업 규모, 지원대책 등을 규정하고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택지업 무관련자,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고발된 자 등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p> <p>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대책 수립 등(안 제21조의2 신설)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민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 지원을 위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지원사업,</p>	<p>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27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대책 수립 대상 공공주택사업의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대책의 내용을 정하는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내용 등(안 제21조의2 신설) 1)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역에</p>	<p>주 민 지 원 방 안 을 구 체 적 으 로 안 내</p>

<p>직업알선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p> <p>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제한(안 제24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개정) 투기방지를 위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당시 국토교통부 또는 공공주택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종사자와 해당기관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그리고 법제9조 제8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공급되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하고자 함</p>	<p>거주하던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민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지원대책 중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은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p> <p>2) 시·도지사 등은 주민지원대책으로서 전업(轉業) 희망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및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p> <p>나.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 요건 강화(안 제24조제5항제4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당시 국토교통부 또는 공공주택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과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람’ 등을 제외함.</p>	<p>협 의 양 도 인 택 지 공 급 제 한 범 위 를 구 체 적 으 로 안 내</p>
---	--	--